

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공고 제2012-1호

## 2013학년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 공고

『2013학년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』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
2012년 5월 10일

(사)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이사장

# 2013학년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 계획

## 1. 검사일시

◦ 2012. 8. 26(일) 09:00~13:00

## 2. 검사지구 및 장소

### 가. 검사지구

◦ 서울(강남), 서울(강북)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전주(총 7지구)

### 나. 검사지역 선택

◦ 검사 지역은 서울(강남), 서울(강북)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전주 등 7개 지역임

◦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(강남) 등 7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, 반드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

### 다. 검사장소

◦ 수험표 교부 기간에 검사지구별로 지정하여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mdeet.org>)에 고지함

### 3. 검사 영역, 문항 수 및 검사 시간

분야	교시	검사 영역	문항 수	검사 시간
의학	1	자연과학 I	40	09 : 00 ~ 10 : 40(100분)
	2	자연과학 II	45	일반화학(16)
				유기화학(13)
				일반물리학(13)
통계학(3)	11 : 10 ~ 13 : 00(110분)			
계	2개 영역	85	210분	
치의학	1	자연과학 I	40	09 : 00 ~ 10 : 40(100분)
	2	자연과학 II	45	일반화학(19)
				유기화학(13)
				일반물리학(13)
계	2개 영역	85	210분	

## 4.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

### 가. 자연과학 I 영역

-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공통 영역으로,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일반생물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
-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생물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
- 일반생물학의 출제 범위
  - 생명의 특성 및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, 세포와 생물, 생식과 발생, 유전과 진화, 생명 활동의 조절, 반응과 조절, 생태, 일반생물학 실험

### 나. 자연과학 II 영역

- 의학교육입문검사의 자연과학 II 영역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,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고, 통계학 분야의 내용을 일부 포함
-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자연과학 II 영역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,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
- 화학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, 물리학은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출제
-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
- 일반화학, 유기화학, 일반물리학의 출제 범위
  - 일반화학 : 원자구조와 주기적 성질, 화학결합과 분자 구조, 기체·액체·고체·용액, 산화와 환원/전기화학, 산과 염기, 반응속도와 화학평형, 열화학,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, 핵화학, 재료화학, 일반화학 실험
  - 유기화학 : 결합과 구조, 입체화학, 작용기의 성질, 유기분석, 작용기 변환 및 유기 반응, 고분자, 유기화학 실험

- 일반물리학 : 역학, 물질의 성질, 열, 소리와 빛, 전기와 자기, 원자 물리, 일반물리학 실험

◦ 통계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수준에서 출제

## 5. 문제 유형, 문항 형태, 기출문항 활용 여부, 문항 배점

### 가. 문제 유형

◦ 문제지는 한 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수험번호 끝자리 수의 홀수, 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형태의 문제지를 배부함

### 나. 문항 형태

◦ 선택형(5지 택1형)

### 다. 기출 문항 활용 여부

◦ 중요 개념 또는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 기출문항이라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음

### 라. 문항 배점

#### 1) 의학교육입문검사

◦ 2013학년도부터 자연과학 I, 자연과학 II 영역은 문항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할 수 있음.

#### 2) 치의학교육입문검사

◦ 2013학년도부터 자연과학 I, 자연과학 II 영역은 문항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할 수 있음.

## 6. 응시 자격

◦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‘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,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’와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함

## 7. 시험 일정

주요 사항	일정	비고
◦ 시험 시행 공고	5. 10(목)	중앙 일간지
◦ 원서 교부 및 접수	6. 12(화)~6. 22(금)	온라인으로 접수
◦ 수험표 교부	7. 30(월)~8. 26(일)	검사 당일은 08:30 까지 교부
◦ 시험일	8. 26(일)	
◦ 정답이의 신청	8. 26(일)~8. 29(수)	온라인으로 접수
◦ 성적 발표 및 통지	9. 25(화)	본 협의회 홈페이지

## 8. 원서 접수

### 가. 접수기간

- 2012. 6. 12(화) 09:00 ~ 6. 22(금) 18:00까지

### 나. 접수시간

-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, 마지막 날은 18:00까지만 접수하며, 지정 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함.

### 다. 접수방법

- 의·치·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mdeet.org>)를 통한 인터넷 접수

### 라. 구비서류

1)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, 2012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,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,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 또는 재학증명서(원서접수 시 첨부 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)를 원서 접수 시 스캐닝하여 첨부

2) 사진 첨부: 최근 3개월 내 탈모 촬영한 증명사진을 스캐닝하여 첨부(5M이하)

**※ 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분야 및 검사지역 변경은 불가함**

## 마.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원서 접수

- 원서 접수시 신체적 장애 란에 ‘v’자 기입
- ‘라’ 항의 구비 서류 외에 신체적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‘종합 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’를 스캔하여 첨부.
- \*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 카드 중 당해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도 됨
- \*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중 약시자와 뇌성마비자의 검사 시간은 일반 응시생의 1.5배로 하되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함
  - 시각 장애자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기타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가 개별 접촉을 통하여 요구 수렴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

## 바.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의 원서 접수

- 기존 회원가입자 중 외국인등록(거소)번호 말소자 포함
- 회원 가입 시 동의서 문구 필독할 것
- 원서 접수시 재외국민란에 ‘v’자 기입
- ‘라’ 항의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
- 검사일 이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번호(또는 거소번호)를 부여 받고 검사 당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(원본 및 사본)과 여권을 지참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 후 사본은 제출토록 함.
- \*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에 응했다 하더라도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

## 9. 수험표 교부

### 가. 교부기간

- 2012. 7. 30(월) 09:00부터 8. 26(일) 08:30 까지

### 나. 교부방법

-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교부기간에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험표를 출력하여 검사 당일 지참함.(단, 흑백 출력일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탈모 촬영한 사진을 부착함.)

## 10. 응시수수료 및 납부방법

### 가. 응시수수료

-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는 195,000원임

### 나. 납부방법

- 원서 접수 시 인터넷 실시간 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(현금 납부나 기타 방법은 불가함)

### 다. 응시수수료 반환

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정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함.

\* 반환 비율(반환액)은 다음과 같음

- 접수마감(6월 22일 18:00시)까지: 100%
-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(6월 22일 18:00시 후 ~ 6월 29일 18:00시): 50%(97,500원)
-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전까지(6월 29일 18:00시 후 ~ 8월 23일 08:00시): 40%(78,000원)
- 시험 3일 전(8월 23일 08:00시 후)부터: 0%(반환 불가)

## 11. 문제 및 정답 공개

- 검사 종료 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을 탑재 하되, 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정답 최종 확정 및 공개

## 12. 성적 표시 및 확인

### 가. 성적 표시

- 자연과학 I, 자연과학 II는 해당 영역별로 표준점수(평균:50점, 표준편차:10)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
-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,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

### 나. 성적 확인

- 개인 성적 확인
-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mdeet.org>)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 가능(2012년 9월 25일 10:00 이후)

## 13.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결과의 활용

-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결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, 개별 의·치의학전문 대학원에의 결정에 따라 학부성적, (심층)면접, 자기소개서, 영어 성적, 선수 과목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의 하나로 활용됨

## 14.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
-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~6항에 준해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하고 당해 검사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검사의 응시자격을 정지함. 다만, 검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,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

-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
- 검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-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검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
- 검사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,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-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

- 당해 검사 무효 및 이듬해에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
-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-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부정행위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대리검사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한 행위
-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
- 기타 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·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

## 15. 수험생 유의사항

- 수험생은 검사 당일 08:30분까지 검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, 때 교시 검사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당해 교시 종료 전에 퇴실할 수 없음
- 응시생은 휴대전화, 무선호출기, 무전기, MP3, 이어폰,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와 같은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을 검사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
-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, 수험표, 시각 표시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등임
-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
-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“수험생 유의사항”을 숙독하고 지시에

따라야 하며, 답안지 작성 시 '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' 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

◦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

※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

(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
※ 수정테이프는 검사 감독관이 제공함

※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

※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음

※ 답안지 작성 시 검사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수정테이프나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◦ 검사 종료 후 문제지를 회수함(문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없음)

◦ 응시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(실명확인을 필한 응시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 중 하나. 실명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과 여권)을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

◦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

## 16. 기타 사항

◦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(전화 585-8523~4)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(<http://www.mdeet.org>)를 참조하기 바람 끝.